

##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제안이유

출생신고와 함께 출산관련 서비스 신청을 하나의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처리하는 정부3.0 행복출산 윈스톱 서비스 시행에 따라, 출산양육지원금 신청 시 기존의 신청서식과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 예규 제48호) 서식인 출산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함.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문규정을 바르게 하고자, 제4조제3항 중 “지급하는 때에는”을 “지급할 경우에는”으로 함.
- 다. 제4조제4항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
- 라. 제5조(지원신청 등)에 제5항으로 지원대상자가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출산 통합처리를 신청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박 검 수

2016년 5월 20일

경우에는 규칙의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하고, 신청에 따른 처리 방법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따른다는 내용을 신설.  
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신설.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2) 건강가정기본법
- 3)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 예규 제48호)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 없음
- 2) 부패영향평가결과, 원안동의
- 3) 성별영향평가결과,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제1189호

##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 하는데”를 “출산양육을 지원하는데”로 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지원기준)”을 “(지원내용 및 기준)”으로 하고, 제4조제3항 중 “지급하는 때에는”을 “지급할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지원대상자가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출산 통합처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의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하고, 신청에 따른 처리 방법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따른다.

제6조제2항 중 “다음달”을 “다음 달”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